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09호

2017. 5. 1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116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	---

◆ 고 시

제2017-162호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0
제2017-16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17-164호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3
제2017-1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9

◆ 공 고

제2017-1133호 2017년도 제8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35
제2017-1135호 『2017년 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36
제2017-1143호 중구 중림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45
제2017-114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46
제2017-115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47
제2017-115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49

◆ 구 고 시

제2017-3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50
--	----

◆ 구 공 고

제2017-4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동대문구)	52
제2017-5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도봉구)	55
제2017-4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58
제2017-4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60

제2017-5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변경)공고(서초구)	63
제2017-652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송파구)	70

◆ 사업소고시

제2017-1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3
제2017-1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3
제2017-1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4
제2017-1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4
제2017-1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5
제2017-1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75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67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 유지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 개정
- 나.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필요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 공공주택 부동산 및 자산에 관한 기준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의 자산 기준 삭제
- 나.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무기간 종료 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무기간과 거주기간을 일치시킴
- 다. 그 밖에 타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에스에이치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71, FAX: 02-2133-0756, E-mail: justiti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담당 최종현								
4. 근거법령명등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전용 85㎡초과 대형장기전세주택 입주자 2,724세대 - SH공사 소유 : 2,699호 - 서울시 소유 : 25호 ※ 서울시 및 공사는 전용 85㎡초과 대형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신규건설·공급을 중단하여 추가 이해관계자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전용 85㎡초과 대형장기전세주택 의무임대 기간 종료시점과 현 입주자의 20년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시점인 2035년까지 존속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전용면적 85㎡초과의 대형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과도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편익대비 높은 비용이 소요됨. ○ 위와 같은 대형장기전세주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관리기준 변경이 필요함. ○ 이에따라 관리기준 변경을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의 임대의무 기간과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일치하고자 조례를 신설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대형(전용 85㎡초과)장기전세주택 운영에 따른 부작용 발생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전세시세의 49.6%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 대형평형으로 서민의 입주가 불가한 주택임.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UN의 적정주거 권장기준인 1인당 17㎡보다 훨씬 넓은 1인당 30.1㎡를 사용하여 주택서비스 과소비 상태임.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현재 소득 8분위(2017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8,445천원) 이하의 소득자가 입주가 가능하며 과거에는 소득 10분위도 입주 가능하여서 현재 10분위도 거주하고 있는 상황임.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기준

- 2006년 : 청약예금 가입자, 소득기준 없음
- 2010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80%이하(소득 9~10분위)
- 2013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이하(소득 8분위)

○ 대형(전용 85㎡초과)장기전세주택의 편익대비 건설·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과다 발생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기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이 없어 서울시 및 공사가 445,305백만원 비용 부담.

※ 장기전세주택 건설비 내역

- 총사업비 : 1,025,010백만원
- 재원조달 : 임대보증금 579,705백만원, 공사 차입금 445,305백만원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료 수입이 없어 운영비용을 서울시 및 공사가 부담하여야하며 2017년 397억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2035년에는 비용이 509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운영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23년	2029년	2035년
수선유지비	2,926	7,389	11,187	14,192
감가상각비	18,868	18,868	18,868	18,868
재산세	9,581	9,581	9,581	9,581
금융비용	8,283	8,283	8,283	8,283
총계	39,658	44,121	47,919	50,924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장기전세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은 20년인바, 의무임대기간 동안 장기 전세주택을 유지 하되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부작용인 소득 8분위~10분위에 대한

과도한 주택서비스 제공과 서울시 및 공사의 과다 부담비용을 개선하여야 하므로 조례 개정 필요.

- 조례개정이 없을 경우 대형장기전세주택은 영속적으로 소득 8분위~10분위에 대한 과도한 주택서비스와 서울시 및 공사의 비용부담이 발생함.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법령상 임대 의무기간 20년후 매각 또는 용도를 전환하고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운영은 중단.
- 전용면적 85㎡초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신규 건설 및 공급은 현재 중단되었으며 운영 중인 대형장기전세주택은 점진적인 폐지를 목표로함.
 - 향후 대형장기전세주택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활용이 불가한바, 의무 임대기간 종료시 매각을 목표로함.
 -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세어하우스 등 타용도의 임대주택으로 전환.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2,724호에 한정되므로 규제신설로 반대하거나 손실을 입게될 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에 대하여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므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시세대비 50%수준의 전세가격으로 로또 전세주택으로 불리고 있고 2015년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의원(새정치 민주연합)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인근 주민과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는바, 사회적 제약은 높지 않음.
- 서울연구원에서 “장기전세주택(SHift) 제도개선 방안(2016.03)”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조례신설로 신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되, 최장 20년으로 한다.”의 최장기간을 변경(단축)하여 시행하는 것 외에 타 행정절차 없음.
- 행정적으로 협조할 기관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며, 서울시와 협조하기로 협의완료 함.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현행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는바,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은 영속적인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되어야함.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기존규제에서 명확하게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바, 기존규제의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목적(의무 임대기간 종료후 대형장기전세 주택의 매각 또는 용도 전환)달성이 불가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기간 명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에서만 명시되어 있으며, 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존규제는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비용 부담 대상자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득 8분위 ~ 소득 10분위 입주자
- 발생 비용 :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야함에 따라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2,724호 입주자의 추가 비용(임대보증금) 20%(263,256백만원) 발생.

※ 비용 산출식

- 대상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2,724호
- 산출식 : 주변시세 - 법률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격(주변시세의 80%)
- 산출금액 : 주변시세 1,316,280백만원 -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1,053,024백만원 = 263,256백만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편익 수혜자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 편익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중단에 따른 비용 921,966백만원(2017년~2036년 비용)이 절감되며 2036년 이후에는 연 52,000백만원 이상 비용절감 가능.

※ 편익 산출식

- 대상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2,724호
- 산출식 : 장기전세주택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재산세, 금융비용) 감소금액을 2017년 ~2036년까지 산출
- 산출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2023년	2024년~2030년	2031년~2036년
수선유지비	34,991	70,675	81,677
감가상각비	132,073	132,073	113,206
재산세	67,066	67,066	57,485
금융비용	57,979	57,979	49,696
총계	292,109	327,793	302,064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부담자는 소득 8분위 ~ 10분위 소득자로 공공이 주거복지를 지원할 대상자가 아님.
- 총 대상자 중 입주 가능 대상자는 2,724세대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비용 발생 없음.
- 편익 측면에서 서울시와 공사 비용 부담이 2036년까지 921,966백만원 절감되어 비용절감에 따른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가 가능.
- 할인율 5.5%(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 적용 할인율) 적용시 비용·편익 비교
 - 비용금액 249,532백만원, 편익금액 537,213백만원으로 B/C가 2.15로 편익이 높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본 규제신설은 전용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공급이 없는바, 시장경쟁과 무관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민간기업은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공급이 없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 할 요소가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장기전세주택은 입주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방식이나 규제 신설로 전용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에 한하여는 준공 이후 최초 입주지정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20년까지만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에따라 향후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운영이 준공 이후 최초 입주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입주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규제 신설은 장기전세주택 법적 의무 임대기간에 위반되지 않고 부합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20년 이후 장기전세 주택 운영 중단 가능함.

※ 법적근거

- 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 할 수 없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4. 장기전세주택 : 20년

- 규제의 존속기한은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의무임대 기간 종료시점과 현 입주자의 20년 거주를 보장을 고려하여 2035년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규제신설 관련 실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며, 규제집행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음. 인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장기 전세주택을 담당하는 인원 3명(부장제 외)이 소요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규제집행을 위하여 조직 및 예산을 신설할 필요없이 기존조직, 인력, 예산으로 집행 가능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규제신설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규 입주자와 체결할 임대차계약서이며, 처리기간은 공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시행하는 기간임.
- 규제신설에 따른 별도의 회계절차 및 행정절차는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규제신설의 처리기관은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서울시의 별도 행정절차 없이 서울주택도시 공사는 공포된 조례에 따라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 규제신설로 현재 거주중인 입주자에게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로 입주하는 입주자는 본 내용을 충분히 숙지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III.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규제신설에 따라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현황을 매년 체크하여 규제신설의 목적(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달성되었는지를 체크.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 중단에 따른 편익을 수입금 (매각 대금 또는 임대료 수입 발생)과 운영비용 절감으로 평가.

2. 기타 참고사항

- 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2호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332,929㎡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목표

-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개선
-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 ※ 비전 :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加里峰’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2)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 3개 핵심콘텐츠, 9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재생학교, 주민공동체사업, 주민공모사업, 재생홍보	900	450	450	-	-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불량도로 등 마을공간 개선	불량도로 · 보도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계단정비	1,011	505.5	505.5	-	-
	범죄 없는 마을 조성	CCTV추가설치, LED 보안등 추가설치 방범순찰 및 안심귀가 활동 · 운영	666	333	333	-	-
	깨끗한 마을 만들기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환경기초질서 교육 및 캠페인	140	70	70	-	-
	방재 대응 시스템 조성사업	비상소화시설설치, 방재예방 교육 · 훈련	140	70	70	-	-
	마을마당 ·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주차장 및 공원 복합 조성 주차장 운영 협동조합 구성 운영	1,872	936	936	-	-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	우마길 도로폐턴포장, 입구 조형물설치 우마길추진위원회 조직 구성, 우마길 특화프로그램, 이벤트 진행	1,206	603	603	-	-
	앵커시설 조성	앵커시설 조성(부지매입비, 리모델링 공사) 앵커시설 운영 조직 구성, 입주 조직별 운영	2,918	1,459	1,459	-	-
	가리봉루트 조성	가리봉 탐방코스 기반조성(포장개선, 보도정비), 안내판 설치, 탐방프로그램운영	1,147	573.5	573.5	-	-
마중물사업 소개			10,000	5,000	5,000	-	-

※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에 따름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국토교통부 협의(승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 : 11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MP,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 운영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1,030	-	1,030	-	-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아게이드설치, 바닥포장 및 간판정비 등	1,919	1,151	346	326	96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연차별 추진)	9,225	-	9,225	-	-
	공중선정비	공중선정비	2,160	-	-	-	2,160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 조성	150	-	150	-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취약계층 대상 저효율조명을 LED로 교체	95	66.5	28.5	-	-
	가리봉 중심도로 정비	폭8~9m, 연장377m (도시계획도로) → 증) 연장 117m, 확폭2~3m,	1,000	-	1,000	-	-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분리수거쓰레기통 설치 지원	4	-	4	-	-
	소통공간 조성 운영	소통광장 조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1,588	-	1,588	-	-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보상, 설계, 공사)	11,696	5,048	3,100	3,548	-
	앵커시설 운영	매입앵커시설 임시활용 앵커시설 운영지원(가리봉실험소)	272	-	272	-	-
연계사업 소개			29,139	6,265.5	16,743.5	3,874	2,256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파급효과(마중물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파급효과	비고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 주민갈등해소 •자생적인 주민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육성 •주민의 교류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자생적 공동체 활성화 •주민홍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불량도로 등 마을공간 개선	•지역내 불량도로와 보도개선으로 보행환경개선 •경사지 안전시설보강, 미끄럼 방지로 생활공간 안전성 제고	
	범죄 없는 마을 조성	•중국동포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리봉이 주거안정성 확보 •주야간 안전한 마을 조성으로 가리봉의 이미지 제고 •방법교육, 방법활동을 통해 주민교류 증진과 공동체 결속강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거지 주변도로 환경의 개선과 주거 쾌적성 증진 •중국동포의 무단투기 점진적 개선과 문화적 갈등 해소 •깨끗한 마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민, 중국동포, 상인의 화합	
	방재 대응 시스템 조성사업	•좁은 골목이 많은 가리봉의 화재대응 능력 제고 •방재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마당 ·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가리봉 북측지역의 주차부족 문제 일부 해소 •주민의 휴게, 교류, 문화 활동 공간 확보 •주민협동조합 운영으로 주민수입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	•가리봉의 대표상권인 우마길을 중심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주민협의체, 우마길상인회, 가리봉시장상인회 등 공동체 활성화 •가리봉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통한 방문객 증대	
	앵커시설 조성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가리봉 도시재생의 파급확대 •주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민의 다양한 주체 발굴과 활성화 •주민조직의 자생력강화와 가리봉과 외부교류 확대	
	가리봉루트 조성	•가리봉 탐방루트 프로그램 활성화로 방문객 증가 •가리봉의 지역자원 가치제고와 역사성과 장소성 강화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부문	사업명	내용	비고
공공기반 시설재생	불량도로 등 마을공간 개선	•불량도로 · 보도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계단정비 ※하수관로 정비사업(협력사업)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구간 설정	
	범죄 없는 마을 조성	•CCTV추가설치, LED 보안등 추가설치	
	깨끗한 마을 만들기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환경기초질서 교육 및 캠페인	
	마을마당 ·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주차장 및 마을마당 복합조성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	•우마길 도로패턴포장, 입구 조형물설치	
	앵커시설 조성	•별집 앵커시설 조성	
	가리봉루트 조성	•가리봉 탐방코스 기반조성(포장개선, 보도정비)	

마. 예산 집행 계획

○ 마중물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0,000	4,738	599	2,348	2,074	241	
사람을더하는 공동체활성화	주민공동체활동 및 역량강화	900	165	52	221	221	241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불량도로 정비 등 마을공간 개선	1,011	-	-	-	1,011	-	
	범죄 없는 마을 조성	666	666	-	-	-	-	
	깨끗한 마을 만들기	140	140	-	-	-	-	
	방재 대응 시스템 조성 사업	140	140	-	-	-	-	
	마을마당 · 주차장 복합시설 조성	1,872	-	-	1,030	842	-	
시간을더하는 문화경제재생	우마길 문화의거리 활성화	1,206	659	547	-	-	-	
	앵커시설 조성	2,918	2,918	-	-	-	-	
	가리봉루트 조성	1,147	50	-	1,097	-	-	

※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에 따름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국토교통부 협의(승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9,139	3,654	10,361	9,299	2,299	3,526	
사람을더하는 공동체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030	209	178	215	214	214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 개선	전통시장시설현대화	1,919	-	1,919	-	-	-	
	하수관로 정비사업	9,225	1,000	1,000	2,000	2,000	3,225	
	공중선정비	2,160	1,700	460	-	-	-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150	150	-	-	-	-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95	95	-	-	-	-	
	가리봉 중심도로 정비	1,000	-	-	1,000	-	-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4	-	4	-	-	-	
	소통공간 조성 운영	1,588	-	-	1,568	10	10	
시간을더하는 문화경제재생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11,696	500	6,800	4,396	-	-	
	앵커시설 운영	272	-	-	120	75	77	

※ 향후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 1회)

-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개선,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

생 부문에 대해 지역내 젊은인구 거주(40세 이하),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 개선, 주민
앵커시설 설치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사업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한 평가 및 보완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기구)	- 사업추진 총괄 운영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의견 및 갈등 조정 - 지역내·외 네트워크망 구축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 총괄계획가, 코디네이터 활동 - 총괄계획가(MP), 자문계획가 (공동체/중국동포/도시건축) 비상근 자문 활동 -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주민의견 '소통창구' - 주민들 참여확대 유도 - 지역의 현안 및 과제발굴 - 주민공모사업 기획·실행 - 주민 공동체활동 추진	3개분과(주거, 문화경제, 공동체) 조직 - 주민협의체 대표 및 각 분과위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견전달 및 협의
사업추진협의회 (의사결정기구)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 및 협조 요청 -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계획가, 주민협의체 각분과, 행정으로 구성 -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 가리봉 우마길 문화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별집앵커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협의체를 운영
행정지원협의회 (행정)	사업실행 행정 지원	- 구로구 도시관리국내 도시재생과(총괄), 물리적 환경개선부서, 사회경제문화 활성화 부서로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지원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활동가 육성, 공동체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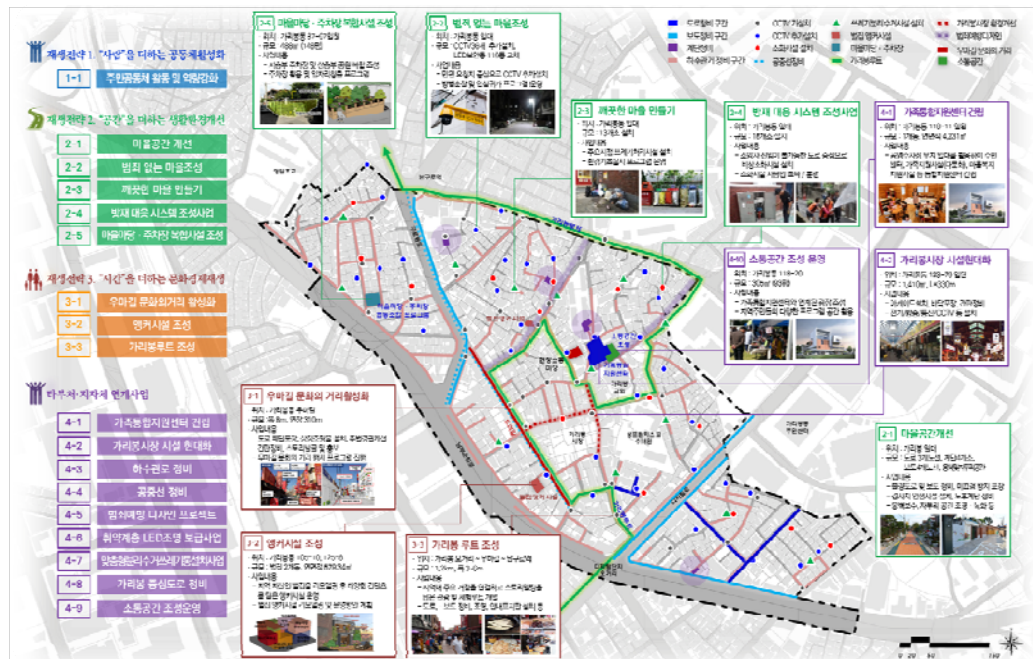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02)2133-7177), 구로구 도시재생과(☎02)860-3497),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에 비치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사업구상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3.30.)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평동 164 일대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200,065.5	감)32,192.0	167,873.5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6존치관리구역 제척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 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합 계	160,150.4	100.0	144,504.6	100.0	6,801.4	100.0	8,844.4	100.0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택지 (획지)	계	112,323.7	70.1	100,412.8	69.5	5,510.1	81.0	6,400.8	72.4	
	주택 용지	95,657.4	59.7	95,657.4	66.2	-	-	-	-	
	종교 시설	1,671.2	1.0	1,671.2	1.2	-	-	-	-	
	상업 업무	14,995.1	9.4	3,084.2	2.1	5,510.1	81.0	6,400.8	72.4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7,826.7	29.9	44,091.8	30.5	1,291.3	19.0	2,443.6	27.6	
	공원	7,068.3	4.4	6,234.3	4.3	834.0	12.3	-	-	
	녹지	1,044.3	0.6	1,044.3	0.7	-	-	-	-	
	도로	27,033.2	16.9	24,255.5	16.8	457.3	6.7	2,320.4	26.2	
	공공 공지	123.2	0.1	-	0.0	-	-	123.2	1.4	
	광장	594.5	0.4	594.5	0.4	-	-	-	-	
	공공 청사	2,920.7	1.8	2,920.7	2.0	-	-	-	-	
	문화 시설	9,042.5	5.7	9,042.5	6.3	-	-	-	-	

※ 200,065.5㎡(지구면적) - 32,192㎡(돈의문4,5,6존치지역) - 7,723.1㎡(돈의문1구역내 존치건물) = 160,150.4㎡

• 촉진구역(돈의문1,2,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없는 돈의문4,5,6존치지역 지구 제척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5) 교통계획(변경없음)
- 6) 경관계획(변경없음)
-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00,065.5	감) 32,192.0	167,873.5		
돈의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227.7	-	152,227.7	도시환경 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	8,844.4		
	존치정비구역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12,720.0	감) 12,720.0	-		지구제척
돈의문	존치관리구역	돈의문5존치관리구역	16,617.0	감) 16,617.0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제척
		돈의문6존치관리구역	2,855.0	감) 2,85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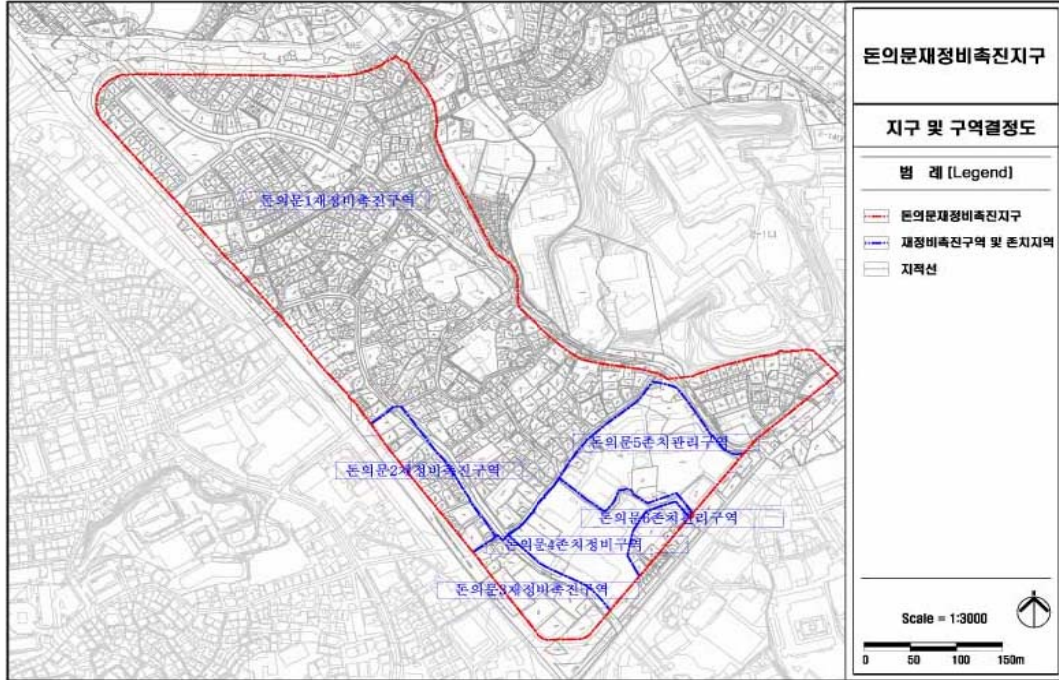
-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1) 돈의문1·2·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5.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6존치관리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 변경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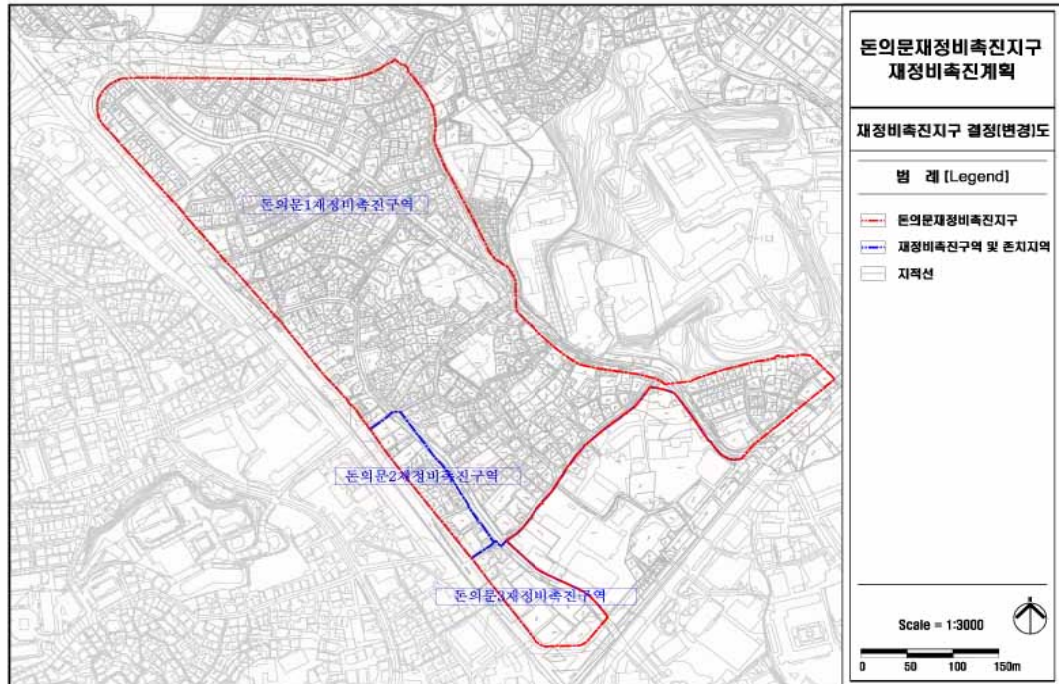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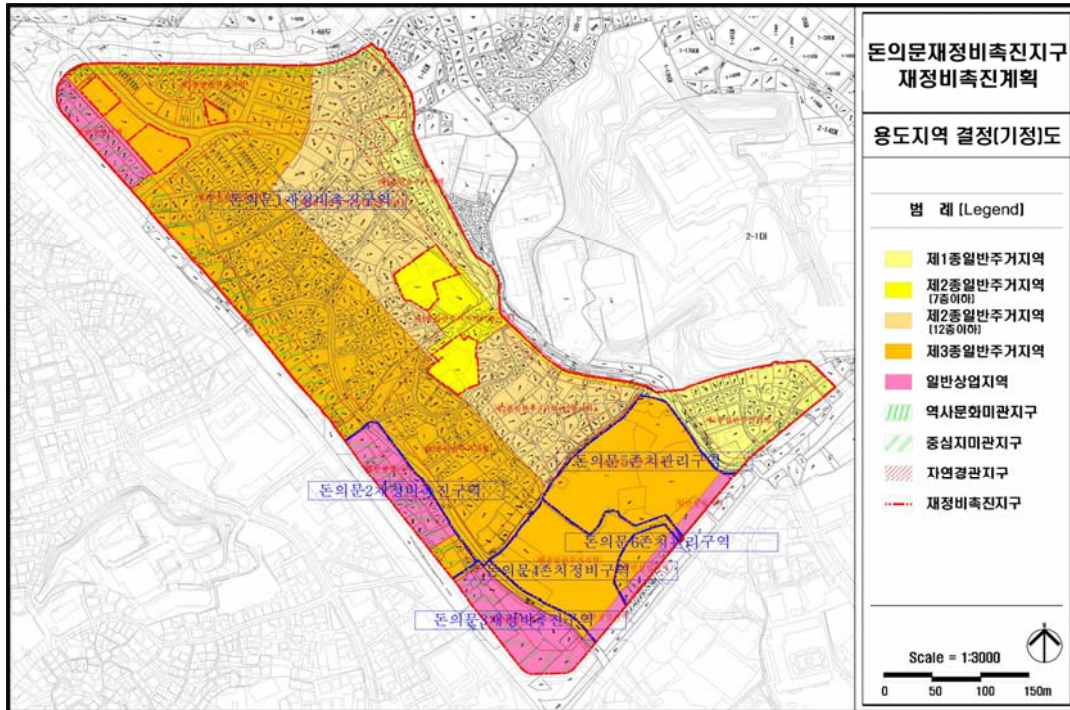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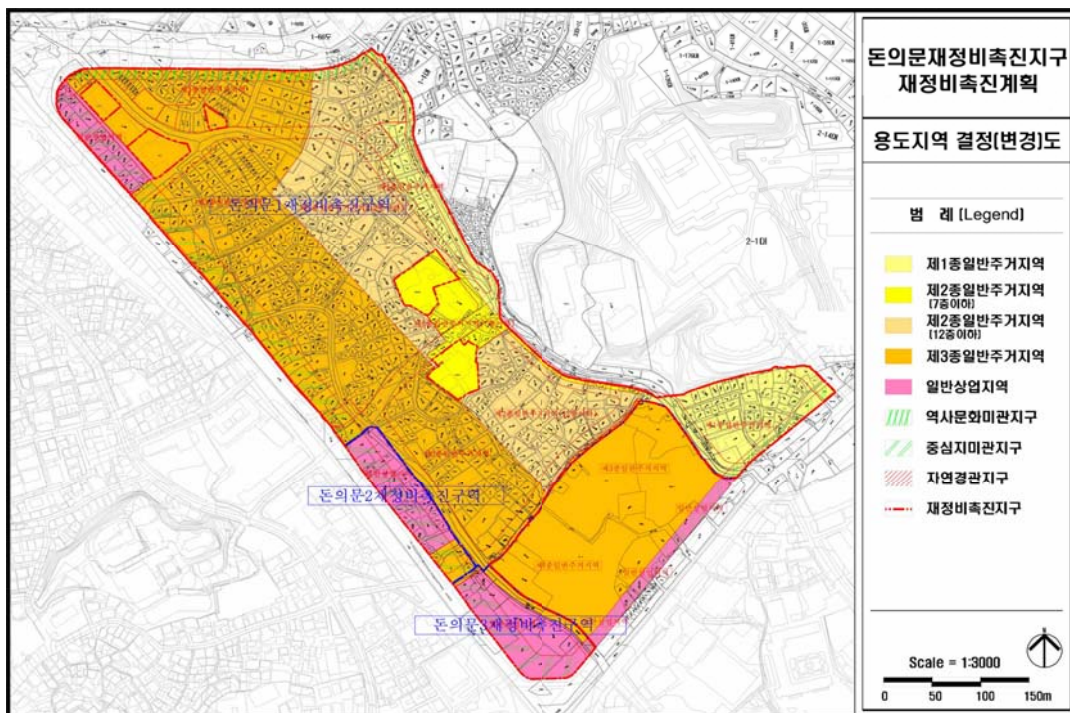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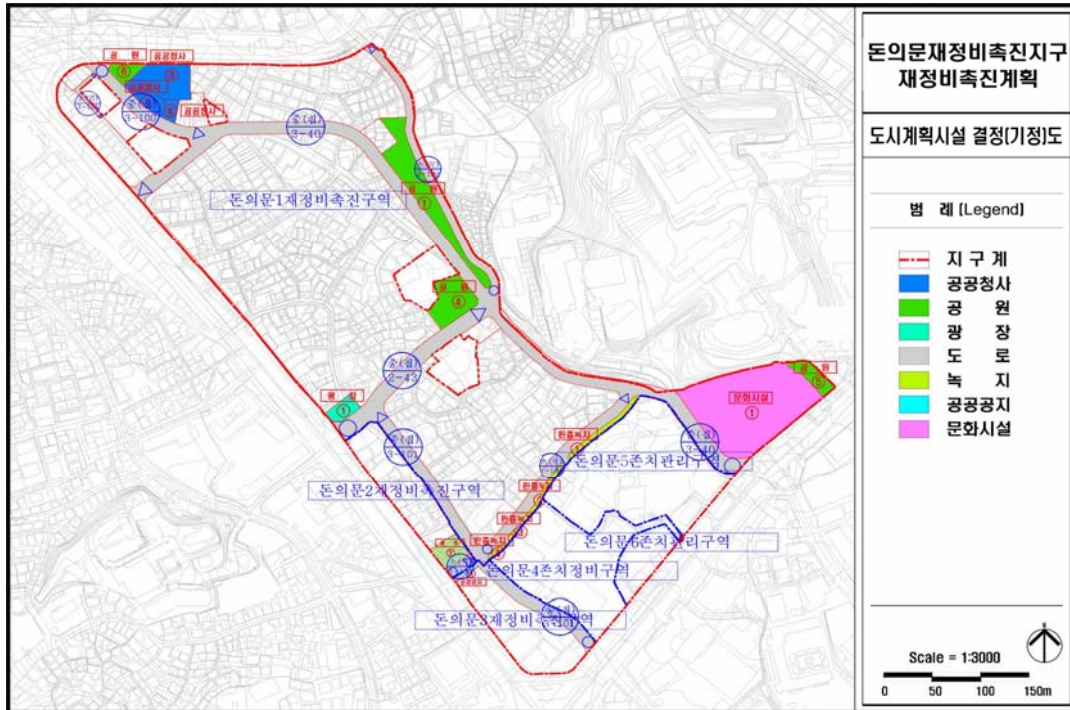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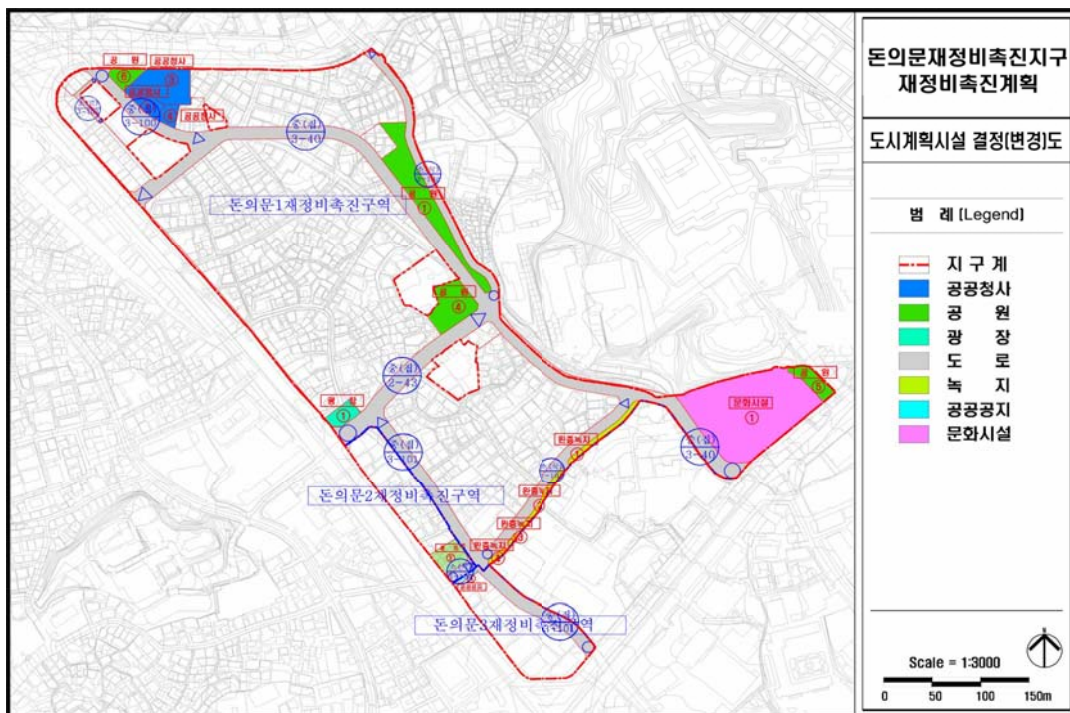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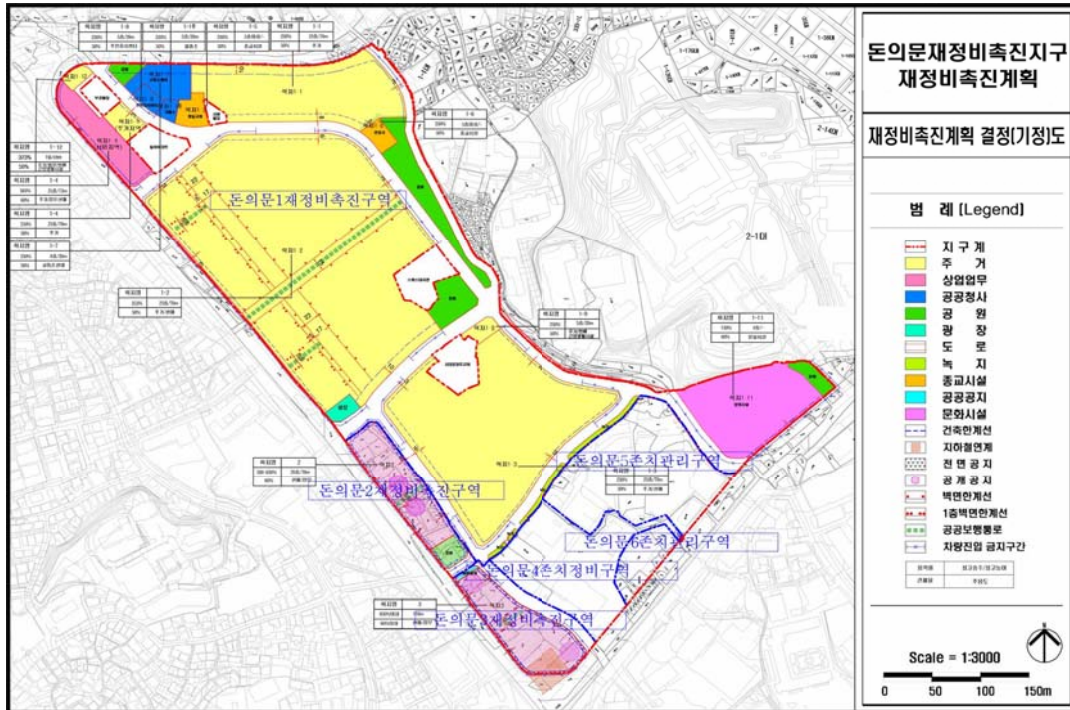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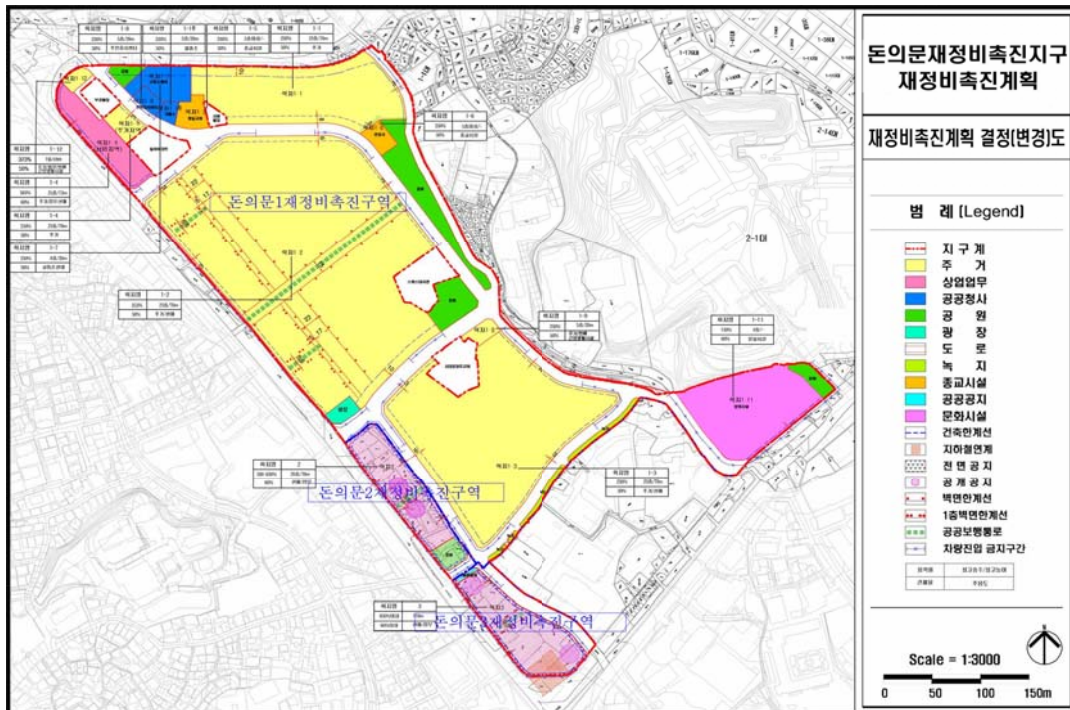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4호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	332,472㎡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목표

- 원주민, 공동체, 외국인 등이 융화되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 지역상권 회복,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비전 : ‘남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산아래 첫 마을’, 오감오락 문화예술마을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2) 도시재생사업 및 자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 3개 핵심콘텐츠, 8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및 역량강화 사업	550	275	275	-	-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 가는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50	75	75	-	-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	3,123	1,561.5	1,561.5	-	-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물리적환경개선, 콘텐츠 발굴 등	835	417.5	417.5	-	-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브랜드개발 및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공동판매장 조성 등	315	157.5	157.5	-	-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디자인포장,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2,171	1,085.5	1,085.5	-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 범죄예방 안전 시설 설치 등	1,395	697.5	697.5	-	-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골목길 녹화, 옥상전망대 조성	1,461	730.5	730.5	-	-
마중물사업 소개			10,000	5,000	5,000	-	-

※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등에 따름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국토교통부 협의(승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 : 11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복합화)	시 공영주차장 복합화 (주차장+커뮤니티시설)	4,000	-	2,800	1,200	-
	군인아파트 활용	용산공원(예정)과 해방촌에 연결한 군인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	중 · 장기 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지역내 공공시설물 간판 개선	100	-	100	-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신흥시장 부분적 환경 개선	165	-	165	-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공중선 정비	해방촌 테마가로 공중선 정비	480	-	-	-	480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신흥로 도로포장 정비	450	-	450	-	-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도가 심한 하수관 정비	1,400	-	1,400	-	-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 · 개량	주택슬레이트지붕 정비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보성여중고교, 용암초교 화장실	470	-	430	40	-
연계사업 소개			7,065	-	5,345	1,240	480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파급효과(마중물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파급효과	비고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관심과 참여 증대 •공동체 활동 활성화(다양한 사업주체 발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구축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토박이 주민, 청년 공동체, 예술인, 외국인 등 모두가 함께 상생하 는 해방촌 생활문화 창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공동체 모임 증가(사업 관심 증대) •해방촌 공동체, 문화예술, 경제활동 활성화 •주민주도 도시재생기반 마련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시장환경 개선, 다양한 콘텐츠 도입, 상생협약 •신흥시장 문화 생성,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약 모델 구축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기획, 디자인, 패션 등 프로그램과 생산환경 조화 •해방촌 문화생성,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대표 문화산업으로 정착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 있는 물리적 공간재생 •해방촌 이미지 향상, 지역마을자원 융화 •골목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걷기 편안한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 안전성, 주거만족도 증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주민 관심 및 참여, 거주환경 개선 •이웃간 교류 및 소통 •골목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부문	사업명	내용	비고
공공기반 시설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거점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신흥시장 활성화	•신흥시장 물리적 환경개선(도로 등 공적공간)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조성,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후계단, 경사로 등 정비 •CCTV, 보안등 등 설치·성능 개선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골목길 녹화(골목길 친환경 포장, 자투리땅 녹화 등) •옥상전망대 조성(공공시설물 또는 주민희망시)	

마. 예산 집행 계획

○ 마중물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0,000	1,433	3,177	3,310	1,428	652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550	175	165	80	70	60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50	-	19	50	50	3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3,123	1,130	856	1,057	40	40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835	-	835	-	-	-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315	-	65	150	50	50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2,171	128	1,137	450	456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95	-	50	1,053	292	-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1,461	-	50	470	470	471	

※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등에 따름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국토교통부 협의(승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협력)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7,065	1,565	4,470	1,030	-	-	
지역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4,000	-	4,000	-	-	-	
	군인아파트 활용	-	중 · 장기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100	-	100	-	-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165	165	-	-	-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공중선 정비	480	480	-	-	-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50	450	-	-	-	-	
	하수관로 유지관리	1,400	-	370	1,030	-	-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 · 개량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470	470					

※ 향후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 1회)

-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부문 등에 대해 신규 공동체 발굴, 주

민협의체 회원수, 사회적 경제조직, 유동인구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사업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체 등을 통한 평가 및 보완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기구)	- 사업추진 총괄 운영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의견 및 갈등 조정 - 지역내·외 네트워크망 구축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 센터장, 코디네이터 활동 - 총괄코디네이터(총괄계획가), 부코디네이터(자문계획가)(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건축) 자문활동 -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주민의견 '소통창구' - 주민들 참여확대 유도 - 지역의 현안 및 과제발굴 - 주민 공동체활동 추진	- 총회, 전체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주거, 경제, 공동체), 임원회 등 조직 - 주민협의체 대표 및 각 분과위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견전달 및 협의
사업추진협의회 (의사논의기구)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 및 협조 요청 -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계획가, 주민협의체 각분과, 행정으로 구성 -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행정지원협의체 (행정)	사업실행 행정 지원	- 용산구 도시관리국내 도시계획과(총괄), 사회복지분야, 주거환경 분야, 공동체분야 등으로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지원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활동가 육성, 공동체네트워크 구축, 주민협의체 활동 활성화,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 등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02)2133-7170),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2),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02)2199-7397)에 비치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사업구상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8호(2009. 9.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61호(2015. 11. 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9호(2016. 9. 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87호(2016. 12.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상암동 ~ 영등포구 양평동(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하수도, 수도공급설비) 사업

2) 명 칭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사업면적 : 131,966㎡

2) 규 모 : 폭 31.4m(왕복 6차로), 연장 1.98k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0년8월31일까지

(변경없음)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토지조서, 물건조서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조서, 물건조서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33-808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3708-2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천구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토 지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지 번	내 역 면적(㎡)				성명	주소	권리관계	
32	당초	양화동	임야	153-36	129		진주강씨양천 공파종중	진주강씨양천 공파종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401동 1404호 (중산동, 하늘마을)		
								서용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8-10		
32	변경	양화동	임야	153-36	129		진주강씨양천 공파종중		강문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2 하늘마을 401-1404	담보가등기	
									강경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843 서울숲스타이트 102-1901	담보가등기	
									강상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동롯데캐슬파크 105-804	담보가등기	
									강인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31 성동마을엘지빌리지6차 603-1002	담보가등기	
								최지원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6동 1601호		
								서현철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25길 12-48		
								서희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길 29 903호		
								서연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87 301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토 지 내 역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 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	당초	양화동	임야	산4-18	2,328	이미숙외					
※ 상세내용(당초)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김덕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89-1 한신빌라 2층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3-1 양정빌라 -11	근저당		
				김덕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42, 2층동(양재동, 한신빌라)	장의성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6길 41(흑석동)	근저당		
				김상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20(갈월동)					
				김숙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110동304호(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김승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8, 105호(갈월동, 동양아파트)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25길 25, 11호(양재동, 양정빌라)					
				김은숙		서울시 서초구 바오포로 31길 13, 에이동 202호(양재동, 현대빌라)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35, 714동 302호(운중동, 산운마을)					
				이미숙		서울시 동작구 민양로 8길 50, 102동 1702호(노량진동, 우성아파트)					
				임경순		인천시 서구 기현로 41, 202동 1002호(마전동, 대원레스피아1차아파트)					
27	변경	양화동	임야	산4-18	2,328	이미숙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토 지		내 역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 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 상세내용(변경)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주소							
성명				성명				관리관계					
김덕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42,2층동(양재동,한신빌라)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3-1 양정빌라 -11 근저당	
김상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20(갈월동)				장의성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6길 41(흑석동) 근저당	
김숙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110동304호(목동,신시가지아파트)									
김승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8,105호(갈월동,동양아파트)									
김옥희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25길 25,11호(양재동,양정빌라)									
김은숙				서울시 서초구 바오포로 31길 13,에이동 202호(양재동,현대빌라)									
김정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35,714동 302호(운중동,산운마을)									
이미숙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 50, 102동 1702호(노량진동, 우성아파트)									
임경순				인천시 서구 기현로 41, 202동 1002호(마전동, 대원레스파이어차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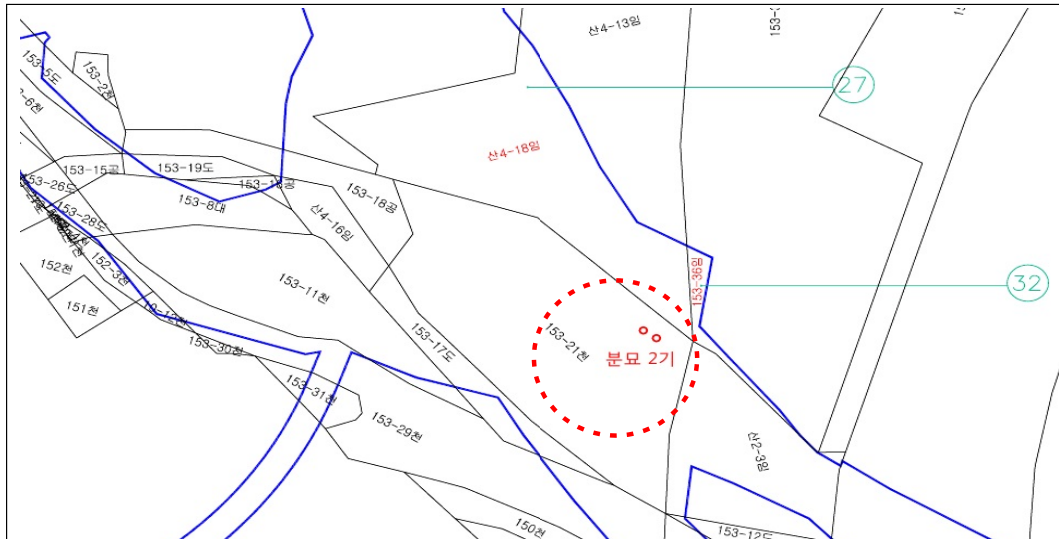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금회 추가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	양화동	153-21 천	분 묘	-	2기	강문희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2 하늘마을 401-1404	

※ 기존 1~6번 물건(지장물)은 변경사항 없음

☐ 분묘 위치도



☐ 분묘 현황 사진



위 치 도(변경없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33호

2017년도 제8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 가. 심의일시 : 2017. 4. 25.(화) 14:00 ~ 16: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8건 8작품 (조각 8)
 라. 심의결과 : 승인 7작품, 부결 1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강서구 마곡 더 랜드 타워	조각	2016-idea	조건부○		명판 타이포그래피 보완
2	강서구 코멧 네트워크 사옥	조각	LOVE	조건부 ○		명판에 원작자명 등 세부적인 작품내용 기입
3	마포구 서교호텔	조각	의도된 풍경	○		
4	I PARK	조각	사랑의 메아리	○		
5	대치국제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각	문(門)		○	재심사유 미반영 및 작품성 부족
6	서울역 센트럴자이	조각	`상상의 숲'	조건부 ○		작품 하단 책모양의 조형물에 대한 안 정성 보완
7	퀸즈파크 9	조각	With LOVE	○		
8	C3-4블럭 신축공사	조각	"첫출근"	○		장비 반입구에 차량통행 유무 확인 후 설치요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35호

『2017년 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한 모범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2017년 서울특별시봉사상』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시상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I. 운 영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 시상개요

○ 시상대상 : 기부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앞장선 시민·단체

○ 시상인원 : 총 21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 상패, 메달 수여

※ 총 시상인원 범위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저촉되므로 미지급

☐ 자격요건

○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직장)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개인 또는 단체
- 다만,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제외대상

- ▶ 봉사상을 수상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년에 동일공적으로 다른 분야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추천권자

○ 행정기관(자치구, 경찰서, 교육기관 등),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 개인 추천 : 10인 이상 시민 연서

☐ 추천방법

추천자	추천방법
▶ 행정기관 ▶ 행정기관 등록 단체	- 추천서 등 제출서식 작성 후 시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자치구 시민표창 담당부서에 제출
▶ 행정기관 미등록 단체 ▶ 개인 추천	- 시민 1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시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자치구 시민표창 담당부서에 제출 ※ 행정기관 미등록 단체는 단체명의로 추천불가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공적심사의결서
(기관 추천서 제출) 각 1부
-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3.5cmx4.5cm, 칼라) 1매
- ※ 첨부서류 및 필수사항 꼭 기재

▶ 추천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 ➡ 서울소개 ➡ 시민상·시민표창(시민상 후보자 추천안내), 웹페이지
(<http://prize.seoul.go.kr/new2014/index.jsp>)에서 다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오프라인 : 시 자치행정과 및 주소지 관할 자치구(자치행정과 등 시민표창 담당부서)
- 온 라 인 : e-메일(201106032@seoul.go.kr)

☐ 접수기간 : '17. 5.11(목) ~ 7.10(월), 61일간

※ 근무시간내(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 우편접수는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에 2017.7.10(월)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우편번호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자치행정과)
- 인터넷 접수 : 2017. 7. 10(월) 18:00까지 접수 바람

☐ 심사 및 발표: 2017. 10월 중(수상자는 개별통지)

☐ 기타사항

- 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
- 나. 시상은 2017.10.28.(시민의 날) 실시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2133-5843) 및 각 자치구 시민표창 담당부서(자치행정과 등)에 문의 바람

<첨부 1>

서울특별시봉사상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명 (단체명)	한 글		성 별		사 진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3.5cm×4.5cm
	한 자				
주 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단체인 경우는 등록기관 및 등 록번호 기재)				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핸드폰 :
근 무 처	(전화)			직 위	

위 사람(단체)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봉사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자 (단체·개인)	단체 및 기관명 (시민추천 : 00외 0인)	(인)
----------------	-----------------------------	-----

대표자 : _____ (인)

주소(소재지) : _____

전화번호 _____

서울특별시장
한국일보사사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학력·경력·수상경력 포함, 단체등록증 사본,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추천자란은 : 행정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기재.

일반시민 또는 미등록단체가 추천자인 경우에는 “공동추천자 별첨”이라고 작성

【 공동추천자 】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 10인 이상 추천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유의사항 >

- (1) 시민추천 및 미등록 단체가 추천권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 하여야 합니다.
- (2)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공적조서는 A4 용지에 주요 공적 내용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공 적 조 서

성명 (단체명)	(한자)		관리번호	기재생략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관 및 등록번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직업		직장명		
직위	(전화번호)			
공적요지 (대표적인 공적위주 작성 - 50자 내외)		공적분야	봉사부문	
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자 기관(단체명) 직위 성명 (인)				

※ 단체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표기

<첨부 3>

주요 경력 및 수상내용

주요 경력		수상 경력		학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 공적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3매까지 가능)

공 적 내 용

<첨부 4>

공 적 요 약 서

성명	(한글) _____ (한자) _____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만 세)		
기간	공적내용 요약	비고 (증빙자료 별첨)	

※ 본 공적요약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1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첨부 5>

공적사실 현장 확인 조사서

관리번호		성명		주소	
확인대상			확인내용		비고
☐ 공적내용(요약) ※					
☐ 조사자 의견 및 특기사항(반드시 기재)					

2017.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43호

중구 중림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28-109 외 1필지상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02-2133-493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010.9	-	1,010.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41.2	감)741.2	-	-	
일반상업지역	269.7	증)741.2	증)1,010.9	100.0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①	중림동 128-109 외 1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010.9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함.

라. 기타 관련사항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4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도담에스테이트(주)	임정환	2017-04-03	서울170037	강남구 선릉로 567, 5층 (역삼동, 대운빌딩)	500,000	신규등록
2	(주)씨플랜	장민구	2017-04-04	서울170038	서초구 반포대로 90, 3층 (서초동, 세환빌딩)	300,000	신규등록
3	(주)엠게이츠	신건우	2017-04-04	서울170039	서초구 사평대로 73, 4층 (반포동, 케이티반포빌딩)	300,000	신규등록
4	청담펜트하우스 피에프브이(주)	마크로 버트마 두라스	2017-04-05	서울170040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여의도동)	6,550,000	신규등록
5	로터스피에프브이 (주)	토마스 리우	2017-04-05	서울170041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21,500,000	신규등록
6	(주)파누엘	김화태	2017-04-05	서울170042	성동구 왕십리로 145-1,2층 (성수동1가)	300,000	신규등록
7	(주)에스피케이디앤씨	김영태	2017-04-18	서울170043	강서구 등촌로51길 11, 지층(등촌동)	300,000	신규등록
8	(주)케이탑자기관리부 동산투자회사	송명곤, 이명식	2017-04-19	서울170044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01호(여의도동,미원빌딩)	42,145,804	신규등록
9	(주)성보씨엔이	권오석, 권혁만	2017-04-21	서울170047	서초구 서초대로40길 49, 4층(서초동)	4,068,498	신규등록
10	(주)노비스종합건설	박종원	2017-04-25	서울120112	송파구 오금로31가길 13, 2층202호(방이동)	600,000	폐업
11	인피니움인베스트먼트 (주)	심응구	2017-04-12	서울080137	종로구 율곡로 190(연지동)	850,000	폐업
12	(주)생보대만홀딩스개 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박영석	2017-04-07	서울140068	서초구 강남대로 299, 9층 (서초동, 강남매트웰딩)	6,144,885	폐업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3	공덕경우개발(주)	최현태	2017-04-06	서울130072	마포구 새창로 11, 16층(도화동)	6,000,000	폐업
14	(주)코크렘제심오호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박승철	2017-04-05	서울140047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삼성동)	62,000,000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5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681	2017.4.3.	(주)이산텔레콤 김은철 110111-6023199	서울 강서구 양천로 510, 321호(등촌동,현대프린스텔)
2	202682	2017.4.4.	패트론포콤(주) 이신재 110111-3744235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28, (신림동, 대영빌딩)
3	202683	2017.4.10.	(주)퓨전데이터 이종명 110111-2252289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5, 6층(역삼동,아승빌딩)
4	202684	2017.4.10.	한경정보기술(주) 한정훈 134111-020356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715호(구로동,한신아이티타워)
5	202685	2017.4.10.	코아인텍(주) 김규환 110111-3335571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303호(양평동5가, 아이에스비즈타워)
6	202686	2017.4.10.	(주)케이티앤씨 권혁섭 110111-1377228	서울 강서구 양천로11길 7, (방화동,케이티앤씨빌딩)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7	202687	2017.4.13.	(주)체인네트웍스 나이영 110111-4043058	서울 강동구 성내로6가길 89, (성내동)
8	202688	2017.4.13.	(주)아이티온넷 변영복 110111-442024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107호(가산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9	202689	2017.4.13.	(주)파이런텍 이병길 134411-0019744	서울 송파구 송이로30길 13, 2층(문정동, 제일빌딩)
10	202690	2017.4.18.	(주)브이아이솔루션 허비또 110111-6303682	서울 서초구 마방로4길 3, 5층(양재동, 양재빌딩)
11	202691	2017.4.18.	(주)아이에스티엔 임해각, 김중도 110111-3935389	서울 서초구 서운로 39, 3층(서초동, 원진빌딩)
12	202692	2017.4.18.	(주)태화시스템 윤영노 110111-1466328	서울 광진구 자양로28길 18-1, 2층(구의동)
13	202693	2017.4.24.	엘릭서코리아(주) 령반딧 110111-6339322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 305호(서초동,양진빌딩)
14	202694	2017.4.21.	(주)래오시스 이란 110111-631570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3, 502호(동소문동4가,홍화브라운)
15	202695	2017.4.21.	(주)오성텔레콤 최행곤 110111-6306909	서울 관악구 은천로 51, 4층(봉천동,은호빌딩)
16	202696	2017.4.24.	(주)드림씨에스정보통신 전관중 110111-5438927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2, 3층(외룡동)
17	202697	2017.4.28.	(주)에스엠시스템즈 이승환 110111-5384815	서울 구로구 경인로53길 90,1606호 (구로동, 에스티엑스더블유타워)
18	202698	2017.4.28.	라인아이티(주) 김동조 234111-0072416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5, 5층(봉천동, 대양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 2133-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55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17.04.05.	202319	(주)누리전기 천예원 115411-0033789	서울 서초구 논현로 79, 1612호(양재동)
2	2017.04.11.	111727	(주)거성파워텍 김남수 110111-4404523	서울 강동구 천중로51길 102, 2층 202호(명일동)
3	2017.04.19.	202058	진솔이앤에스(주) 김정현 110111-490738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7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9차)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등)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96)

구 고 시

◆ 강서구고시 제2017-37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359호(2004.11.15)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개화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사업의 명칭 : 개화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산43-12 외 1필지

다. 사업의 규모 : 1,900m²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토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합계	2필지		1,900	1,900							
1	개화동 산43-12	임야	1,100	1,100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509호	홍계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 13동 1106호	홍익규				
2	방화동 463-17	임야	800	800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길현로23길 20-8	장재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근저당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0, 10동 801호	옥혜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3	강서세무서	근저당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17-4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7-21호(2017.04.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이문동 170-127호 일대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호 일대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공공공지) 사업

다. 사 업 명 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라. 사 업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167㎡

마.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사.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아. 열 랐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 랐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원녹지과(☎2127-4396)

차. 게 재 방 법 : 시보게재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대지	76	76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2	이문동	170-128	대지	35	35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이문동	170-209	대지	56	56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별첨 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건물	벽돌조	49.12㎡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김광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	임차인	
2	이문동 170-209	건물	연외조	49.12㎡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수목	감나무(R12)	1						
		수목	감나무(R14)	1						

◆ 도봉구공고 제2017-53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 3. 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조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9-24호(2009. 4. 7.)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및 지형도면 정정 결정된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4외 3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4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8,5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도봉구청장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도봉구청 문화체육과(☎2091-2262)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토지조서(2017년도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 부 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관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8,500	8,500	8,500							
1	창동	산202 -4	임	900	900	900	정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정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호1길77번길 **	2.8/28				
2	창동	산203 -7	임	1,700	1,700	1,700	장수교	서울 성북구 장월로32길 *--*(장위동)	2.8/28				
							장문영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2.8/28				
							장재웅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5.6/28				

연번	소재지 (도·군·구)	지번	지목	공 부 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창동	산204 -4	임	2,600	2,600	2,600	이순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5, ***동 ***호 (하늘빛아파트)		신안상호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대치동)		
4	창동	산205 -23	임	3,300	3,300	3,300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0, ***동 ***호 (장항동, 호수마을)		오만순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8, ***동 ***호 (신곡동, 드림밸리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정선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동 ***호 (주엽동, 강선마을)	근저당권 설정	
										한상현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동 ***호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근저당권 설정	
										김영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8길 **, *** (창답동)	채무자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 ***동 ***호 (신천동, 파크리오)	채무자	
										유창열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	근저당권 설정	

◆ 노원구공고 제2017-4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노원구고시 제2017-32호(2017.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1,636㎡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복 편입에 따른 사업지번·면적 변경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	임야	임야	5,056	1,000 (1,089.4/5,506)	1,300 (1,089.4/5,506)	이규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1,000 (495.8/5,506)	1,300 (495.8/5,50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1길 44, 단촌(쌍문빌라)	류미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57번길 20(하동)	근저당권자	
					1,000 (3,470.8/5,506)	1,300 (3,470.8/5,50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2	월계동 산1-1	임야	임야	200	200 (90/1,590)	0	국현명	서울시 도봉구 창동 61				
					200 (1,439/1,590)	0	김연준	서울시 도봉구 창동 256-2				
					200 (61/1,590)	0	국(국토 교통부)	세종시 도음6로 11				
3	월계동 746	전	나지	62	62	62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4	월계동 747	전	나지	274	274	274	윤길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378-1				
5	월계동 746-3	철도 용지	일부 도로	295	100	0	국(국토 교통부)	세종시 도음6로 11				

◆ 노원구공고 제2017-44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노원구고시 제2017-31호(2017.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6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2,294㎡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변경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이행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65/2.573)	전승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254					
					1,585 (159/2.573)	최규식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1동 502호					
					1,585 (139/2.573)	이국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2-115					
					1,585 (139/2.573)	이광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47-1					
					1,585 (139/2.573)	황완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정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지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65/2.573)	김순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8-36					
					1,585 (165/2.573)	김지영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14 우방오성타운 105-170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면적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59/2,573)	김의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08-1503					
					1,585 (159/2,573)	홍정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김정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80-1 진산마을삼성7차@ 701-1004					
					1,585 (139/2,573)	박종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124 중앙구로하이츠@ 5-1105					
					1,585 (159/2,573)	김제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박용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101-1506					
					1,585 (139/2,573)	나유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0-5 대우로카운티@ 104-802					
2	월계동 산65-8	임야	임야	709	1,585 (139/2,573)	김희미자	서울시 강남구 도사대로 92길 10-0 대우로카운티@ 104-802					
					709	정혜승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1 현대4차@ 401-406	조철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0 금호@ 102-604	근저당권자		

◆ 서초구공고 제2017-570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변경)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2('01.9.2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2('16.6.2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5호('16.1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원지동체육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변경 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원지동체육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가) 사업부지 면적 : 20,923㎡
 - 나) 시설면적 : 11,06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변경 없음)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변경내용 : 옥외광고물 및 임목 지장물조서 추가)
- 나.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지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23-0	잡	14,834	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	원지동	26-0	전	3,093	1,74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	원지동	26-1	대	298	22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	원지동	26-2	대	132	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5	원지동	28-0	전	3,002	3,00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6	원지동	28-1	전	2,294	1,89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7	원지동	28-2	전	1,099	54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8	원지동	29-1	전	492	47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9	원지동	29-2	전	2,581	2,56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0	원지동	29-8	답	1,114	575		국(건설교통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1	원지동	32-0	전	5	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2	원지동	32-3	전	838	346		국(건설교통부)				
13	원지동	33-0	전	2,029	1,96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4	원지동	33-2	전	336	330		국(건설교통부)				
15	원지동	33-3	도	144	19		국(건설교통부)				
16	원지동	34-1	전	504	50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7	원지동	34-2	전	315	3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8	원지동	34-4	전	19	1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서울특별시			지분 4분의1	
19	원지동	34-8	전	435	435		국(건설교통부)				
20	원지동	34-9	전	100	100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21	원지동	34-10	전	496	6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2	원지동	34-12	도	261	131		국(건설교통부)				
23	원지동	34-13	전	85	29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24	원지동	35-3	답	3	3		국(건설교통부)				
25	원지동	35-9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26	원지동	35-10	답	1	1		국(건설교통부)				
27	원지동	35-11	전	247	27		국(건설교통부)				
28	원지동	35-13	도	135	13		국(건설교통부)				
29	원지동	35-14	답	129	32		국(건설교통부)				
30	원지동	38-0	전	293	29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31	원지동	38-3	전	303	303		국(건설교통부)				
32	원지동	38-4	전	855	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3	원지동	38-6	전	26	17		국(건설교통부)				
34	원지동	38-7	도	261	145		국(건설교통부)				
35	원지동	39-0	전	245	2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6	원지동	39-1	전	473	2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7	원지동	산79-2	임	454	454		국(신림청)				
38	원지동	산79-3	임	1,100	1,100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142	조영출				
39	원지동	산79-5	임	170	170		국(건설교통부)				
40	원지동	산79-6	임	15	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41	원지동	산79-9	임	904	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2	원지동	산79-11	임	1,373	1,3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3	원지동	산79-13	임	1,481	28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4	원지동	산79-14	임	1,016	78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5	원지동	산79-15	임	1,608	9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6	원지동	611-2	도	898	213		국(건설교통부)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개소, 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산79-3	옥외 광고물	철 골	1개소	-	주식회사 에드21 두원산업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8층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2	원지동	산79-3	임목	R15~R80	79주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42	조영출				



◆ 송파구공고 제2017-652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6호(2015.09.24)로 결정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 1) 열람기간 : 2017. 5.11. ~ 2017. 5.25.(14일간)
- 2)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3) 열람내용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196	방이동 41	방이동 4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67	6~7 (7)	국지 도로	196 (54.64)	방이동 41	방이동 41-2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기정	소로	3	68	6	국지 도로	162	방이동 42-6	방이동 41-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변경	소로	3	68	6~7 (7)	국지 도로	162 (54.83)	방이동 42-6	방이동 41-6	일반 도로	-	건고244호 (71.5.5)	

* ()는 금회 확폭구간 임.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청사	송파구 방이동 41-8번지 외 5필지	면적	-	176.00	176.00	-	공공업무사 무실
				층수	-	지상2층	지상2층		

* 입체적 결정범위는 공공청사 연면적 중 전용면적(176㎡)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공청사 연면적 321.99㎡(전용 176.00㎡ + 공용145.99㎡)

*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D1-4	방이동 41-8, 9	544.5	공동개발 지정	-	-
	방이동 41-8, 9, 10, 14, 15, 16	1,630.0		공동개발 지정	

■ 건축물의 건축선·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 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설치될 수 없음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	선형 변경 없음

■ 대지내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2m/차도형)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구분하여 지정 -방이지역 : 1~4m (대상지: 1m/차도형)	결정도 참조

4)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담당: 이규용/ ☎:2147-300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건설(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서울시계 내 한강 (강동구 고덕동~ 구리시 토평동)	선박 1척 (기선 1척)	한강 내 가교설치	2017.05.02. ~ 2017.05.31.	2017. 5.2.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세븐수상레저 (대표 김태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	한강대교~동작대교	-동력선 2척 -무동력 5대	수상레저사업	2017. 5.1~ 2017.11.30	2017. 5.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선박 2척	한강교량 주변 하상잔재물 수거	2017.05.10~ 2017.09.15	2017. 5. 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모터보트 1척 파워보트 1척 구조선 1척 (83㎡)	수상레저사업	2017.5.5. ~ 2017.10.31.	2017. 5.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서울마리나 (대표:이승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1	유 선 - 동력선 6척	유선사업	2017.5.5 ~ 2017.5.31	2017. 5.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프라이어스 이노베이션	송파구 잠실동 1-2	잠실대교~영동대교남단 1km (오리보트: 잠실동1-2 주변)	무동력 10대	수상레저사업	2017. 5. 4. ~ 2017.10.31	2017.5.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